

인형뽑기 게임기 변경 - 게임산업법 등급분류 위반 행위 적발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 +
제재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소송 - 패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8구
단6250 판결



사안의 개요

- (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업소 - 인형뽑기 게임기 구입 제공
- (2) 경찰에 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방법으로 변경 제공행위 적발
- (3) 관할 지자체 구청에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위반 이유로 해당업소에
대한 1개월 영업정지처분
- (4) 업자가 불복하여 행정심판 제기, 패소 + 재결 후 행정소송 제기

원고 게임장 업소의 주장요지

① 원고는 문제된 게임기를 일시적으로 도입하였다가 곧 중단한 점, ② 가사 원고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단 1회 위반행위만으로 전 재산과 대출받은 돈까지 투자한 영세업자인 원고와 4명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당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③ 원고가 변경한 방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소위 '이색 인형뽑기'를 모방한 것으로 경품으로 제공하는 인형의 크기에 따라서는 집게로 들어 투입구에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가 있어서 대신 12개의 공을 상자에 넣으면 인형을 들어 투입구에 투입한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는 등급분류받은 기존 방식에 비하여 특별히 더 사행성을 조장하는 방식이 아니고, 원고는 위 방식의 인형뽑기를 통하여 기존 방식보다 오히려 더 적은 소득을 얻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반행위에 비해 무거운 것으로서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기준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선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법원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 요지 - 청구기각, 민원인 패소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 제1호 사목, 제2호 마목의 (3)은 이 사건과 같이 등급분류심사를 받은 뒤 그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구 게임산업법의 취지가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고, 위 입법취지 실현을 위한 수단인 등급분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유통은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받을 불이익 못지않게 이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상 필요도 크고 중요하다.

또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원고로서는 당연히 위 영업의 주된 근거 법령인 구 게임산업법 및 하위 법령을 숙지하여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단지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게임물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됨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제3주장도 이유 없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야 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 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

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

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5.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

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

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때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8구단6250 판결

기업법무, 기술법무, 계약분쟁, 제작납품계약, 손해배상,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